공주시 공고 제2026-3164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맞춰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특별승진 임용기준 신설, 경력경쟁임용시험 방법 개선, 자격증 명칭 현행화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및 인사 기준을 확입하고 가산점 평정제도를 개편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7조,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포함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경우 첨부 불요함 명시

○ 경력경쟁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15조,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8)**

- 임용권자가 채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필요경력(민간경력에 한함)을 1년 이내에서 단축 가능
- 박사·석사 학위 취득예정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개선
-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50%)을 응시요건으로 인정

○ 특별승진 임용기준 신설**(안 제27조)**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또는 핵심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경우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요건 신설**(안 제27조의2)**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및 인사교류 근무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

○ 가산점 평정제도 개편**(안 제35조, 별표 15)**

- 민원업무(격무 또는 기피 업무)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분야 삭제, 위임사무 평가 분야 실적가산점 조정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경력기준 반영**(안 별표 8, 별표 13)**

○ 기타 미비사항 보완·정비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6)에 따른 자격증 명칭 현행화 및 지도직 일부 직류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별표 11)
- 대한민국명장, 병역준비역, 국가보훈부 등 용어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
- 기타 오·탈자, 띄어쓰기 등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24. ~ 2026. 12. 4.(1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2월 4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2층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1-840-2242 / FAX: 041-840-2307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041-840-224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2층 자치행정과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우를 제외”를 “경우를 제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명”을 “성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인사위원회 수당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하는 기간”을 “정하는 기간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신규임용시험”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으로, “시험요구서류”를 “시험요구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7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5.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제8조제3항 중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을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으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험실시기관의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히,"를 "특히"로, "연령 ·학력"을 "연령·학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용권자가 제1항"을 "임용권자가 제1항"으로, "요구할때"를 "요구할 때"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본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용예정직렬"을 "임용예정 직렬"로 하며, 같은 항 중 "임용예정계급"을 각각 "임용예정 계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용예정직급"을 "임용예정 직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 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5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2"를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용 예정직급"을 "임용예정직급"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 및 지도직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을 "제5항까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로, “한다”를 “하고, 제7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예정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 예정”을 “임용예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표”를 “같은 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이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사역직류공무원”을 “사역직류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을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를 “임용후보자등록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를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함에”를 “작성할”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를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5급시보공무원”을 “5급 시보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5급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을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따라 임용권자”를 “따라 임용권자”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임용예정직급별 (5급”을 “임용예정 직급별(5급”으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을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없는등”을 “없는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본청 및 직속기관”으로, “직급공무원”을

“직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근무성적,읍·면·동의 근무경력·포상”을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에”를 “시”로, “읍·면·동에서는”을 “읍·면·동은”으로, “배치한다”를 “우선 배치한다”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진행 할”을 “진행할”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가산점 평정) ①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별표 15와 같다.

② 별표 15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및 민원 격무·기피업무의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사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 대상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합계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의 평정 대상기간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해당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최근 3년

2. 6급·7급(연구사·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최근 1년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합계는 평정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이 조와 별표 15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등 가산점 평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11, 별표 13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 및 별표 15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실적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5 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실적가산점의 부여기준은 종전의 제35조제5항에 따른다.

② 별표 15 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요건을 갖춘 공모사업 및 시군평가 실적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5조제5항에 따라 가산점을 평정한다. 이 경우 해당 가산점은 제35조제5항에

따른 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반영한다.

제4조(민원 격무·기피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근무경력 및 가산점은 별표 15 제2호의 해당 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및 가산점으로 본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새로 기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근무경력에 대하여 종전의 특정업무 가산점과 민원 격무·기피업무 가산점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개정안>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8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4] <개정안>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 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안>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 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개정안>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정 비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측 지	기 술 사 : 지적 기 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기 능 사 :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기 사 :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 리	조 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 생	사 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 계급 / 직류		연구관	연구사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 계급 /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계급 / 직렬 /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계급 / 직렬 /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곤충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공학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개정안>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시설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보건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4] <개정안>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의3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 자 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 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공학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화 공 화 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산업곤충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농촌지도	임 업 조 경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농촌지도	수 의 가축위생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어촌지도	해양환경 수산자원 어 촌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개정안>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5조제4항 관련)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 (3년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사.검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2급 수사관	3급 수사관	4급 수사관	5급 수사관	6급 수사관	7급 수사관	8급 수사관	9급 수사관
기능직공무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1] <개정안>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 (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과학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전기		일반전기
	전자		전자
	금속		금속
	섬유		섬유
	화공		화공
	화학		
	물리		-
농업연구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환경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작물보호	농업	일반농업
			식물검역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산업곤충	농촌지도	잠업
	원예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원예

연구직		과학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	임업	전직류
	조경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공중보건	보건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건축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방재안전
	재난관리		

2. 지도직공무원

지도직		과학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촌지도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업	녹지	전직류
		녹지연구	임업
			조경
	산업곤충	농업연구	산업곤충
	원예	농업연구	원예
	축산	농업	축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의	수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공학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로
		해양수산연구	전직류

[별표 13] <개정안>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6조제2항 관련)

구분 \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학교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5급	6급	7급	8급	9급

[별표 15] <개정안>

1.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35조제1항 관련)

분야별	대상 및 요건	가점(※월)	최대 반영점	비고
가. 인사교류자	-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산정	0.05점	1.2점	
나. 직무파견자	-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최초 파견 임용된 날부터 산정하며 교육훈련 파견은 제외	0.025점	0.6점	
다. 전문직위	-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5점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0.15점		
라. 민원 업무(격무·기피)	- 제2호의 업무를 상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해당 직위에 최초 임용된 날부터 산정	0.03점	1점	
마. 재난 및 안전관리	- 제3호의 업무를 상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해당 직위에 최초 임용된 날부터 산정	0.025점	0.8점	

※ 월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개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한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2. 민원업무(격무.기피) 범위 및 대상자(별표 15 제1호라목 관련)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 및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가산점 부여 대상업무	대상자
복지·현장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기초생활 및 자활근로 업무	담당자(2명)
	–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장사 업무	담당자(1명)
	–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장기요양 업무	담당자(1명)
	– 가족지원과 보육팀 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업무	담당자(2명)
	– 축산과 가축방역팀 가축방역 업무	가축방역팀장 및 담당자
인허가·단속	– 허가건축과 인허가 업무	담당자
	– 투자유치실 개별공장 승인 업무	담당자(1명)
	–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위생지도팀 식품접객업 등 지도·단속 및 인허가 업무	담당자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수립·결정·변경·집행 등에 관한 업무	담당자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및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	담당자(1명)
	–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	담당자(2명)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2명)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별표 15 제1호마목 관련)

영 제32조제2항제5호,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 및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아래에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가산점 부여 대상업무(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 「하천법」	-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 「소하천정비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농어촌정비법」	- 「산림재난방지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해구호법」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해당 법령 소관부서의 모든 업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의 근무경력에 한한다.

4. 실적가산점(제35조제1항 관련)

분야별	대상 및 부여기준	상한
중앙시책평가	중앙행정기관 주관 시책평가 수상자	최대 0.5점
정부포상	정부 포상 수여 공무원	최대 1점
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최대 0.5점
적극·협업행정	적극행정 또는 협업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최대 0.5점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 정성지표 총괄 및 지표 담당자(팀장포함)	최대 1점
정부혁신	정부혁신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최대 0.5점

※ 실적가산점 관련된 가점범위 등 평정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인사운영계획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안>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시연도 및 회수	(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직급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부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 ---------- ---------- ---------- 경우를 제외---------- ----------.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출석위원의 서명 3. ~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 7. (생 략) 8. (생 략)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각 호------- ---------- ---------- ---------- -----. 1. (현행과 같음) 2. -------- 성명 3.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4.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생 략)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 ---------- ---------- 정하는 기간 내----------. ------- ---------- ---------- ---------- ----------.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7조(응시수수료) ① ----------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

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험요구 서류----------.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 ---------- ---------- ----------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 설>	5.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② (생략)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생략)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 또는 실험실시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시험실시기관의 장----------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 ---------- --- 특히 ---------- ----- 연령·학력 --------- ---------- ---------- ----------. ----------.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 -- 요구할 때---------- ----------.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 제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	② 「국가기술자격법」, -----

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 ---------- ----------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생 략)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③ 삭 제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④ ---------- 임용예정 직렬---------- 임용예정 계급 ----------. -----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 설>	---------- 임용예정 계급---------- ---------- 임용예정 직급----------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

	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자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연구 및지도직규정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 ---------- ---------- --.
3.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3. 임용예정 직급---------- --.
. (생 략)	.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⑨ ------ 제5항까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 ---------- ---------- ----------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하고, 제7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예정일로 한다. ---------- .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⑩ ---------- 전문임기제공무원---------- .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 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⑪ ---------- 경력경쟁임용시험 ---------- 임용예정 ---------- .
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 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은 표----------. ② ---------- --- 준용한다. 이 경우 ---------- ----------.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공무원 2.·3. (생 략)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 ---------- ---------- ---------- -------. 1. ---------- 사역직류 공무원 2.·3.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② (생 략) ③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④ (생 략)	제19조(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 ----------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생 략)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② ---------- 공무원으로 임용되거 ----------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③ ---------- 작성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 ------- 5급 시보공무원----------.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

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 ---------- ---------- ---------- ---------- ---------- 따라 임용권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 ---------- ---------- ---------- ----------.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 (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1. ---------- ---------- 임용예정직급별(5급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 공무원(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신 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27조의2(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 ----------. ---------- ---------- 없는 등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읍·면·동의 근무경력·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 본청 및 직속기관---------- 직급 공무원----------. ----------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서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시---------- 읍·면·동은 ---------- 우선 배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 진행할 ---------.
제34조(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① (생 략)	제34조(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수당 지급 등 재정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 ---------- ---------- ----------. ----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
제35조(가산점 평정)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훈련 파견자는 제외한다. 1.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자 : 1개월 마다 0.05점(최대 1.2점) 2.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35조(가산점 평정) ①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별표 15와 같다.

파견자 : 1개월 마다 0.025점 (최대0.6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최초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3점을 부여하되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다른 직위에 임용되어 가산점을 받는 경우 1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실 개별공장 승인 업무 담당자 (1명) 2.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기초생활 및 자활근로 담당자 (2명) 3.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장사 담당자 (1명) 4.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장기요양업무 담당자 (1명) 5. 가족지원과 보육팀 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담당자 (2명) 6. 허가건축과 인허가 담당자 7. 축산과 가축방역팀 가축방역	② 별표 15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및 민원 격무·기피업무의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사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팀장 및 담당자 8.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위생지도팀 식품접객업 등 지도·단속 및 인허가 업무 담당자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직위의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③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 대상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은 시장이 정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최초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5점을 부여하되 0.8점	④ 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합계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다른 직위에 임용되어 가산점을 받는 경우 0.8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⑤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하며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실적가산점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의 평정 대상기간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해당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주관 시책평가 수상자 : 최대 0.5점	1. 5급: 최근 3년
2. 정부 포상 공무원 : 최대 1점	2. 6급·7급(연구사·지도사): 최근 2년
3. 모범공무원 : 최대 0.5점	3. 8급 이하: 최근 1년
4. 적극·협업행정 우수공무원 : 최대 0.5점	
5.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 최대 0.8점	
6.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우수공무원 : 우수기관 선정 시 정성지표 최대 1점, 정량지표 최대 0.5점	
7. 정부혁신 우수공무원 : 최대 0.5점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 사유가 같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합계는 평정규칙 제27조제1항에 따

은 경우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연구관·지도관) : 최근 3년 2. 6·7급(연구·지도사) : 최근 2년 3. 8급 이하 : 최근 1년	라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이 조와 별표 15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등 가산점 평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